

안동 李庭檜 집안 소장 ‘墓直頃役完文’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족특권의 성격

김혁*

목 차

- I. 서론
- II. 이정희 집안 묘직탈역완문의 분석
- III. 이정희 집안 묘직탈역완문의 발급근거
- IV. 이정희 집안에서 묘직탈역이 갖는 의미
- V. 결론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사족 특권의 묘직탈역완문을 통해 고찰하였다.

묘직탈역완문이란 사족 문화의 주요한 한 측면인 선영경관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었던 묘직의 역을 탈면시키는 행정처분에 대한 보장문이다. 이 문서는 주로 수령에 의해 발급되는 관문서로서 조선후기 사족의 특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되었다. 그런데 이정희 집안의 묘직탈역완문에는 주목할 만한 특성이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사족에게 허용되는 탈역 묘직의 수를 훨씬 넘은 15~20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같은 탈역권의 성격을 완문의 발급근거를 해명함으로써 이 집안의 특권이 갖는 성격에 접근하려 하였다. 그 결과 이정희 집안이 이항의 종손가라는 점과, 존현, 효리는 문화적 명분을 이용하여 이같은 특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이 집안에서 특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후득적인 문화적 명분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양천제를 표명하는 한에서 양인 내부의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의 압박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족층이 갖는 특권층으로서의 특성을 이해할 수

* 부경대 강사, 고문서학 전공

있었다. 그들에게 문화는 사회적 지형의 활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분의 구성은 사실상 명분을 관철시키는 집단을 위한 것인 만큼, 다른 어떤 조치에 불만을 느낄 법한 다른 집단을 상정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때 떠올릴 수 있는 집단은 여타 사족층이었다. 즉 이 집안에서 획득한 특권은 사족 일반의 공의에 의거하고 있고 그들과의 명분적 합이 없이는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집안에서 왜 이만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던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 이래의 일반적인 문제인 노동력의 안정된 경영을 탈역권을 통해 확보하려는 조치의 일단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이 집안의 묘지탈역완문은 탈역 특권의 부여라는 의미 뿐 아니라 분화되어가는 상급 사족층의 특권을 공인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묘지탈역완문, 탈역권, 상급사족층, 사족 특권, 문화적 명분, 사족의 공의

I. 서론

양반문화는 17세기 이래 사족들이 자기비판을 토대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던 결과였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이때 형성되었던 양반문화는 선조의 무덤을 중심으로 형성된 先塋文化와 書院을 중심으로 형성된 書院文化로 대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반문화에 대해서는 사족들만이 독특하게 누려왔던 문화의 한 형태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문화가 하층민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사족들이 갖는 계급의식의 산물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소고에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양반문화가 사족들에게 의미하였을 현실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까 한다. 즉, 사족들이 자신의 현실적 특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이 같은 문화를 어떻게 이용하였을 까라는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에 학계에서는 사족층의 특권에 대해서 조선전기에 형성되었던 법적 특권에 주로 주목하여, 그 특권을 文武班 官職을 獨占하는 정치적 특권, 全家徙邊刑·體刑의 免除를 둘러싼 형사상의 특권 및 軍역 면제를 골자로 한 軍役 상의 특권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軍역면제의 경우에는 인조 5년(1627)에 사족에 대한 兪軍초처가 공식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사족은 軍역에 대한 법적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제반 특권들을

통하여 조선사회는 양반과 상민을 가르는 폐쇄적 신분제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본다.¹⁾

그런데 조선후기 사족층이 갖는 특권은 법제적 측면만을 가지고 논란하기 곤란한 점이 많았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조건에 처해있었다. 사족층은 사회적으로는 특권층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제도적 보장을 법적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는 조선의 국가가 민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이념적 기반이 기본적으로 良人是 평등하다는 均평관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위에서 언급한 均역상의 특해도 관직생활의 수고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성습화되어 법제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같은 均평에 대한 국가의 압박 아래에서 사족들의 문화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요한 후득적 성취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사족층이 법제적 범위 밖에서 성취하고자 하였던 특권은 다분히 문화적이라는데 그 특색이 있다. 국가는 사족층과 성리학적 지배이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족층은 이와같은 현실적 지형지물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다. 사족층은 先塋文化와 書院文化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로 표방할 수 있었고, 그 명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특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선영문화는 자기 조상의 무덤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효의 이념과 부합하며, 서원문화는 사족만이 갖는 독서인으로서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른바 독서의 공간에 대한 보호와 그곳에서 상징적으로 제례를 거행하며 선현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존현의 이념에 부합된다. 두 경우 모두 성리학적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므로, 사족문화의 핵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정부나 타계층에 공감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조선후기 사족층의 특권은 결코 노골화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문화적 이념을 통해서만 취득될 수 있었다. 이 두 문화에 대해서만 큼은 중앙정부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이 지방관도 독서인 출신이므로, 이러한 이념적 명분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1)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 2000), 227~300쪽 참조

필자는 이러한 두 방면의 사족 문화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사족들의 특권이 갖는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지만,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상 선영문화 그 중에서도 묘직탈역에 관한 특권의 성격을 그 외적 표현물이라 할 수 있는 완문에 의해 탐구할 것이다.²⁾

대체로 사족이라면 관습적으로 대개 1명의 묘직은 탈역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명 이것은 사족특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소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명의 묘직을 탈역받는 경우가 아니라 다수의 묘직을 탈역받는 경우이다.³⁾

여기서는 그 한 예로 안동의 이정희 집안이 수취하였던 묘직탈역완문을 들었다. 이 집안에서 탈역받은 묘직의 수는 적어도 15명, 많게는 20여명이 넘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정희 집안이 어떠한 사회적 처지에서 어떠한 사회적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수의 묘직을 탈역시킬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⁴⁾

이와 같이 묘직의 탈역은 사족의 대표적인 특권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사족에게 어떤 성격의 특권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이 집안이 지방관을 상대로 묘직을 탈역받을 수 있었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같은 사건의 전개를 통하여 지방관과 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각각의 의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사족층 내부에 있었던 계층분화의 실상과 이를 통해 형성된 상급 사족층으로 일컬어 질 수 있는 계층이 어떤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특권의 성취를 위해 어떤 사회자원을 동원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완문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김혁, 「完文의 16세기 기원과 그 특성」, 『古文書研究』 27(2005), 25~29쪽 참조.

3) 김혁, 「조선시대 完文에 관한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5), 534~543쪽 참조.

4) 필자가 이 집안을 이정희 집안이라고 한 것은 최초의 완문을 취득한 이가 이정희(1542~1612)라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이정희 집안이라고 한 것은 이정희를 중심으로 한 長子 계열을 가리킨다.

II. 이정희 집안 묘직탈역완문의 분석

士族들에게 先塋(조상의 무덤)이란 이른바 “양반문화”라고 불리는 자기 문화의 독자적인 표현물이었다. 선영은 사족들에 의해 형성된 宗法制에 입각하여 나타난 可視적인 標識로서 자기 집안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여타 집안이나 계층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도록 고안된,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문화적 산물이었다. 이에 그들의 선영은 사족계급 뿐 아니라 사회의 전 계층이 공감하는 문화가 되었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조차 사족층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족층만의 독자적인 문화현상이었다. 이 선영은 사족 문화의 특색이면서, 동시에 그 문화에 의해 사족층이 갖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보호막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영을 수호해야한다는 대전제에는 국가와 사족이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화적 공유 속에서 사족은 국가에게 선영의 수호를 자신의 권리로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윽고 사족의 선영수호는 사회적 통념상 사족이라면 마땅히 누려야할 특권으로 자리잡아 나갔다.

그런데 선영수호가 도리어 조선 후기 사족의 경제적 특권을 확대시키는 명분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선영수호라는 이념적 명분을 사족이 어떻게 이용하였는가라는 실상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동의 한 사족인 이정희 집안에서 현전하고 있는 완문을 분석하고자 한다.⁵⁾

5) 『古文書集成 41—安東周村眞城李氏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完文1.

- 01 鶴山齋舍完文
- 02 府爲永定守護事故松安君卽退陶李先
- 03 生之五代祖故軍器正卽李先生之高祖故贈
- 04 戶曹叅判卽李先生之曾祖也世積德慶爲生
- 05 大賢凡諸尊慕我李先生之人孰不於茲三府君惟
- 06 其所以景慕者耶三府君之墓皆在境內而禁護無人
- 07 樵火之患將無以禦之豈所以待吾先生之先世者哉口使
- 08 中朝之人處之尙德景賢之意豈如是哉宜爲守土者之羞
- 09 也茲於松安君之墓別定五戶軍器正夫人及叅判墓各定
- 10 五戶鑄除齋舍典守僧徒雜役永世無墜使先賢先世之
- 11 墓得免意外之撓後來繼今其有所考而諒之尙事
- 12 萬曆三十五年七月 日
- 13 府使 (押決)

* 여기서 글씨체를 변형한 것은 음각 목판본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

이 완문은 목판으로 남아있던 것을 어느 때인가 다시 먹으로 찍어 탐본으로 남긴 것이다. 후대의 문서에 의해 확인될 수 있듯이 이 완문은 발급자인 수령의 친필본이라고 한다. 이 친필본은 게시할 목적으로 목판에 새겨 제작한 것이다. 이 완문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목판이 현재 남아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현존 탐본에 의거해 볼 때 이 목판은 발급당시부터 사본을 바로 목판으로 제작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목판으로 제작하였던 것은 여타 완문의 내용 중 ‘완문을 해당 청에 걸어놓는다’는 식의 투식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完文이 처음 발생한 초기에는 완문을 목판으로 제작하였던 사례가 많았을 것 같다.

이 완문을 목판으로 제작하였던 것은 목판 자체를 齋舍에 게시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완문이 16세기의 경우와 같이 수령이 갖는 고유한 재량권의 일종으로서 사족파의 친분에 의해 일회적으로 발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일 것이다.

이외에도 위와 동일한 목판을 탐본한 완문이 1건 더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이 탐본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2건씩 혹은 그 이상으로, 목판을

답본으로 제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작산재사에서 모시고 있는 세 분은, 이후 각각의 재사에 모셔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각 재사는 자기 수호를 위하여 이같은 답본이 필요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를 통해 완문의 목판 제작이 여러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문서는 당시 安東府使였던 鄭述가 진성이씨가 중에서도 안동파의 종손이었던 이정희 집안에 속해 있던 작산재사에게, 이황 선조들의 선영을 보호하는 묘직과, 齋舍를 맡아 지키는 승도의 잡역을 견감할 것을 내용으로 발급한 완문이다. 당시 안동도호부사가 정구였다는 사실은 이후 정조 17년(1793)에 발급된 所志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 이 소지에 의하면 이 완문은 정구가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그 날 바로 발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구가 이황의 문인이었던 만큼 이 집안이 이황을 배출한 가문이었다는 것은 그가 이 집안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다. 더욱이 정구는 재임시에 당시 종손이자 이 완문의 실질적인 수취자이기도 한 李庭檜의 서당을 방문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정구가 이 집안과 지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그런데 위 완문의 수취자가 어느 개인이 아니라, 鵠山齋舍로 되어 있다는 점은 17세기 완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작산재사는 1480년 진성이씨 4대조인 李禎의 분묘를 위하여 설립된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 완문이 16세기와 같이 하인들 개개인에게 발급되지 않고 '작산재사'에 발급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사가 갖는 당시 사회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사에 묘직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선 이 재사에 승려가 있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16~17세기만 하더라도 작산재사는 애초에 해당 묘의 제사를 위해 건립된 후, 승려들이 그 제사를 거행하였던 이례적인 풍습이 남아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재사가 완호의 대상이 되

6) “粵在寒江鄭先生莅府之日 纔給守護完文 其文有曰 府爲永定守護事 (後略)….”(『古文書集成41—安東周村眞城李氏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156쪽. 所志類21)

7) 김문택, 「安東 眞城李氏家 齋舍의 건립과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27(2003), 114쪽 참조.

었다는 것은 당시의 독특한 사회적 유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왕실이 자신을 수호하는 원찰을 수호하듯이, 그와 같은 원찰의 기능에 짝하여 사족의 원찰격인 재사에서도 왕실의 원찰과 거의 같은 기능이 있었고, 아울러 사족도 그 재사를 수호하려 하였다. 이것은 앞서 16세기의 완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문건 집안에서 자기 집안의 영당을 사찰에 두었던 것도, 당시 일반화되었던 동일한 문화적 풍속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완문의 서술 서식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문서의 발급근거를 기술하고 있다. 작성자는 이황선생 선조의 묘소를 버려둔다면 이곳의 수령된 자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비탄에 가까운 주관적인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도 후대에 보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茲”이하는 이 완문의 처분 내용이다. 즉, 이 부분은 공권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싣고 있는 영역이다. 여기서는 각 묘직과 승도의 탈역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탈역의 대상이 되는 묘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즉 2대조 松安君 李子脩의 묘, 3대조 李云侯의 부인 묘, 4대조 李禎의 墓에 각각 5호씩을 배정하고 재사의 승려들과 아울러 탈역을 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황의 선조라는 점 때문에, 尊賢의 명분에 의거해 그 선조의 묘를 보호할 묘직을 탈역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운후의 묘 대신에 그 부인의 묘를 정하였던 것은 당시까지 이운후의 묘가 실전되었기 때문이다.⁸⁾

그리고 이 완문의 결사에서는 이 완문의 증빙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완문을 제시하여 효력을 성취할 증빙의 대상자를 명기하고 있다. 이 완문에서 수취자는 작산재사이고, 증빙 대상자는 작산재사가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을 할 대상이다. 증빙대상자는 문서에서는 발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데 “앞으로 올 사람들”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오늘날의 뜻을 이어 이것을 상고하여 헤아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올 사람’이란 바로 작성자 뒤에 부임할 수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8) 위의 논문, 106쪽, 주 17)에 진성이씨 주촌파의 시조로부터 4대까지의 묘소위치와 실전여부 및 재사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되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다.

Ⅲ. 이정희 집안 묘직탈역완문의 발급근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완문은 당시 安東府使였던 鄭述가 이정희 집안에 속해 있던 작산재사에 내린 것이다. 이때 수령이었던 정구는 주도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이황 선조의 선영 묘직의 탈역을 주장하고 있다. 이 완문은 정구가 이정희 집안과 맺은 개인적 연분에 의해 발급된 것이지만, 뚜렷한 명분이 없이 20호가 넘는 호의 역을 감면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이 완문에는 발급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故松安君은 퇴도 이선생의 5대조이고 故軍器正은 이선생의 고조이며 故贈戶曹參判은 이선생의 증조이니 대대로 덕을 쌓아서 대현을 낳은 것이다. 우리 이선생을 존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이 세 부군에 대하여 경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⁹⁾

이 구절에 의하면 묘직을 탈역하는 일은 被葬者가 이황이라는 명현의 선조이기 때문에 이황에 대한 경모로 인한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피장자가 이황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용납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이황의 조상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그 묘직까지 탈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논리에 의하면 선현을 존숭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는, 선현의 조상들도 선현과 마찬가지로 존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논리의 귀결은 이황의 선조를 존모하는 것이 이황을 존모하는 것이며, 그의 선조를 존모하는 방식은 그의 묘를 수호할 墓直을 탈역시켜야 하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발급의 근거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이 논리를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존현의 논리를 효의 논리와 결합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논리에 대해 사림의 公議도 지지하였다는 점을 첨부한 것이다.

여기서 이 논리의 타당성 여부는 그다지 중요치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논리

9) “故松安君 卽退陶李先生之五代祖 故軍器正 卽李先生之高祖 故贈戶曹參判 卽李先生之曾祖也 世積德慶 爲生大賢 凡諸尊慕我李先生之人 孰不於茲三府君 惟其所以景慕者耶”

를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보다는, 이같은 구구한 논리를 필요로 하였던 그 시대의 현실적 구조가 더욱 중요한 요점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16세기의 사족이 이러한 특권을 취득하는데 이 같은 구구한 논리가 굳이 필요하였을까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완문 발급에 대한 官의 관점은 후일 이정희 집안의 청원서에 제시된 다음의 題辭들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i) 경내의 사대부 분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찌 다 완문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같은 퇴계 선생 조상의 묘소는 후학들이 우러러 본받는 도라는 점에서 다른 것과 차별하니 완문을 성급한다.¹⁰⁾

ii) 퇴계선생 집안의 선세묘정을 수호하는 등의 일은 누가 우러러 정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다만 사가에서 무덤을 지키는 데 3인을 쓰는 것은 법전에서 벗어난 일이니 타도에서도 없는 일이다. 지금 조사하여 바로잡으라는 특교가 있어서 봉행이 시급하였으므로, 허다한 궂역을 보충할 길이 없어서 혼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다시 생각해 보니 비록 법외라 하더라도 遵行한 지가 이미 오래되기도 하였고, 호소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완문은 이전대로 시행하고 산직을 兵으로 痍記하는 일은 分揀하도록 할 일이다.¹¹⁾

i)는 정조 1년(1777)의 소지에 대해 처분하였던 제사이다. 이 제사에 의하면, 사대부의 묘직에게 완문을 다 발급할 수는 없지만, 존현의 입장에서 완문을 작성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수령은 이정희 집안에게 묘직 탈역의 특권을 주는 근거로 “후학들이 우러러 본받는 도라는 점에서 다른 것과 차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법제 밖에 있는 관습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완문을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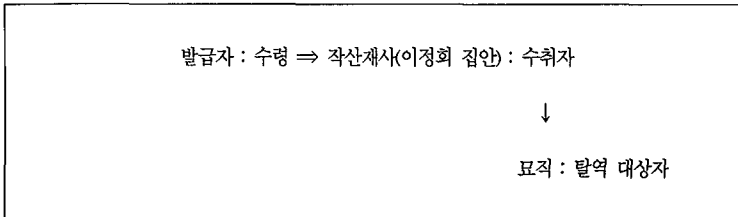
10) “境內士夫墳山守直之人 何可盡出完文 而如是先生祖先之墓 其在後學仰體之道 與他自別 完文成給事”(『古文書集成』 41, 安東周村眞城李氏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所志類17)

11) “先生家先世墓庭守護等節 孰不爲之尊仰盡誠 而第念私家守塚三人 係是法典之外 而他道之所無也 目今特教查正 奉行時急 而許多闕額 無路填充 不得不有混侵之舉 而更思之 雖是法外 遵行已久 所訴如此 完文段 依前施行是遺 山直兵捧痍段分揀向事”(『古文書集成』 41, 安東周村眞城李氏篇(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9), 所志類21)

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족들의 여론이 관습법적인 효력에 준하는 영향력을 끼칠 만큼 사족들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ii)는 정조 17년(1793)의 소지에 대한 제사이다. 여기에서는 수령이 사대부가의 묘직을 顔役해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탈역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묘당 3명의 묘직을 탈급해 달라는 이정희 집안의 청원에 대하여, 관에서는 원칙적으로 私家의 묘직을 3명이나 설정한다는 것은 법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존현의 관점에서 法外라 하더라도 遵行한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호소한 바에 따라 원문을 이전대로 시행하여 산직을 군역에서 빼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에 의해 탈역묘직의 수가 17세기 초의 5명에서 18세기 당시에는 3명으로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 집안의 사회적 실력이 줄어들었던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도 役總制에 의해 군역을 배당하고 있었으므로 수령으로서 탈역을 해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령들이 모든 사족들에게 원문을 발급하여 그들의 묘직을 탈역시킨 것은 아니었다. 즉 그들은 원문 발급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그 탈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수령과 사족 사이에서 타협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성이씨와 같은 명족일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관행적 논리를 들어 그 요구를 수용해주며, 그 처지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족과 수령 및 묘직으로 이루어진 위의 사회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이정희 집안 원문에 나타난 탈역의 구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령은 이정회 집안에게 묘직을 탈역해 준다는 내용의 완문을 발급해 주었다. 이 구조에 의하면 묘직은 탈역 대상자이지만, 현실적 이익의 수혜자는 이정회 집안이었다. 이 도식에서 두가지 형태의 사회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령과 이정회 집안 간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정회 집안과 묘직과의 관계이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두가지 측면의 사회관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수령이 완문을 발급함으로써 허락해 준 묘직의 탈역이 이정회 집안에 있던 기존의 묘직을 탈역시키는 일을 의미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탈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차이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현실세계에서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기존의 묘직을 탈역시켰던 것이라면 여기서의 탈역은 주인가와 묘직 사이에 이미 형성된 기존의 사회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인가가 관으로부터 취득한 탈역권을 가지고 새롭게 묘직을 모집한 것이라면 그 의미는 다르다. 이때 주인가의 탈역권은 이를 매개로 주인가와 묘직 등 수하인 사이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정회 집안은 이 중 어느 경우에 속하는 것일까? 다음의 기사를 통해 이정회 집안이 산직을 경영하는 것은 후자에 속했을 것이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퇴계 선생 때부터 山直을 召募하여 完文을 발급해 주도록 청하는 소장을 올려서 선영을 수호하도록 하였다.¹²⁾

이 기사는 정조 1년(1777)의 것으로서 이황 때로부터 200년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이정회가의 진술대로 이황이 과연 산직을 소모하였는지의 여부는 알기

12) “自先生時 召募山直 呈出完文 使之禁護”(『古文書集成』 41, 所志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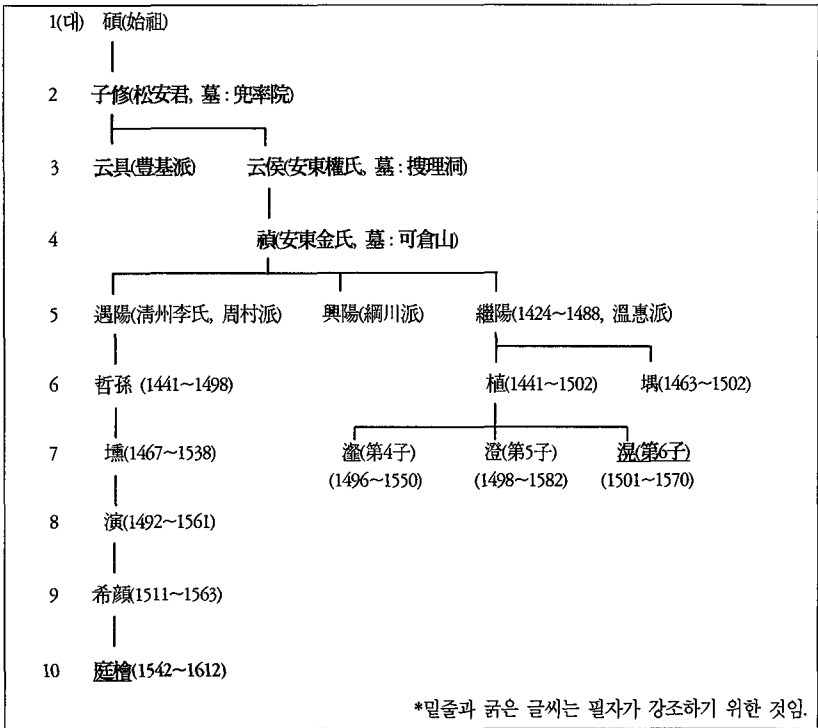
어렵다.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소지가 올려졌을 때 이정희 집안의 관념으로는 산직을 모집한다는 현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정희 집안이 취득하였던 특권은 사족이 관으로부터 탈역권을 획득 받아서 그 탈역권을 통하여 산직을 召募할 수 있다는 특권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회적 관계는 주인가와 노비가 맺는 사회적 관계 즉 주인가가 노비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적인 소유관계와는 구별된다. 사족의 소모에 의하여 투탁한 산직은 자발적으로 사족과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사회관계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투탁한 산직에 대한 주인가의 지배양식은 선권적인 직접적인 인신지배권은 아니지만 그 간극은 문화적 요소에 의해 채워져 보호를 매개로 한 가부장적, 인격적 사회관계라는 특색이 있다.¹³⁾ 결과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정희가와 묘직을 묶어주었던 사회적 관계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역체계와 그로부터 취득된 사족의 특권에서 연유하였던 것인 만큼 국가가 일차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발급자인 관과 수취자인 이정희 집안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관은 이황의 선영을 수호할 묘직이라는 명목 하에 완문을 발급해 주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황 집안에 직접 완문을 발급하여야 더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정희 집안이 이황과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이 탈역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이정희 집안과 이황 집안, 그리고 그 선조들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세계도를 참고해보도록 하자.¹⁴⁾

13) 김혁, 앞의 논문, 614~624쪽 참조.

14) 김문택, 앞의 논문, 110쪽에서 재수록.



〈그림 2〉 진성이씨 안동파의 세계도

위의 세계도에 의하면 이정회집안과 이황집안은 이정회의 6대조 이정에게서 갈린다. 더욱이 이정회는 이황과 촌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먼 친척이다. 조선시대의 공동체 범위가 직계손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면, 매우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집안이 현실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영역은 1대부터 4대까지의 조상이 동일인이라는 사실뿐이다.

이정회 집안에게 이황과 관련된 이같은 작은 공유점은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큰 자산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정회 집안이 진성 이씨 안동파의 대종손이므로, 1대에서 4대까지의 묘역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책임과 권리가 이정회 집안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정회 집안이 어떠한 논리와 현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묘직탈역완

문을 수취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정희 집안이 동원하였던 사회적 자원은 무엇보다 자기 집안의 1대부터 4대까지의 선영이 이황의 직계선조라는 점이다. 5대 이후와 그들의 묘직 탈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2대부터 4대까지 선영의 묘직만이 탈역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 선영들만이 이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집안에게 있어서 이황은 1대부터 4대까지를 같은 조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만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이황이라는 선현을 내세워야만 이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경상도 안동부에서 이황이라는 이름의 명목가는 어느 가치보다도 컸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정희 집안은 이황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15명~20여명에 달하는 묘직을 탈역시킬 수 있었다.

IV. 이정희 집안에서 묘직탈역이 갖는 의미

앞서 이정희 집안이 어떻게 자신의 현실적 근거를 활용하여 현실적 특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를 밝혔다. 다음의 문제는 이 특권이 이정희 집안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였을까 하는 점이다. 이정희 집안이 묘직을 탈역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묘직을 탈역시키려 하였던 것은 앞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묘직의 탈역이 어느 정도의 특권이기에 이정희 집안에서 그렇듯 많은 묘직을 탈역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것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이 집안에서 묘직이 어느 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 뿐 아니라, 당시 묘직의 존재방식을 해명하는 일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집안에는 묘직의 존재방식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해오고 있는데 墓直案이 바로 그것이다. 이정희 집안에는 『鵲山精舍山直都案』 5건, 『鵲山齋舍松安君廟守職奴案』 1건이 남아있다.¹⁵⁾ 묘직안이란 단순히 묘직의 명단을 적어

15) 『古文書集成』 42, 517~529쪽 수록.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묘직을 관에서 직접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墓直案에는 모두 관인이 찍혀 있다. 예컨대 壬辰案의 경우는 안동도호부사의 휘호와 서압이 있어 관으로부터 공증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묘직안의 내용을 보면, 兜率院山直·可倉山直·搜理洞山直·坎岳山山直 등 4곳으로 나뉘어 각각 5명의 산직을 두고 있고, 따라서 산직의 총수는 모두 20명이다. 이 산직안이 발행된 시기는 위의 제사가 발급된 시기로 추정되므로, 수령이 원문을 그 이전대로 시행하라고 한 것이 이전에 5명의 탈역 명수대로 시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문에는 이와같이 각 탈역노비의 花名이 실려있는 노비안이 원문과 짝을 이루어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90년에 『鵲山精舍山直都案』과 『鵲山精舍松安君廟守直奴案』이 동시에 작성되었다. 후자인 『鵲山精舍松安君廟守直奴案』의 경우 산직안이 아니기 때문에 묘직인원을 별다른 구분없이 실고 있다. 이것 역시 관인이 찍혀 있어 관의 공증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산직안들을 통하여 18세기 후반 山直들의 사회적 존재양식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정희 집안의 묘직들이 어떠한 사회적 존재양식을 가졌는지를 구명하는 것은 이정희 집안에서 묘직탈역원문을 발급받으려는 수취 의지를 파악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 된다. 사족층이 묘직탈역원문을 선영의 묘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은 원문을 발급받는 현실적 근거를 밝히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묘산에 소속된 頭役 墓直奴의 현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각 墓山 소속 墓直 현황

산직인(작성연대) 花名	壬辰案 (1772년)	丁酉案 (1777년)	(己亥案 (1779년)	庚戌案 (1790년)	『鶴山精舍松安 君廟守直奴案』 (1790년)	丁巳案 (1797년)
孟得	兜率院	兜率院				
仲億	兜率院	兜率院	兜率院			
丁玉	兜率院	兜率院	兜率院			
達根	兜率院 可倉	可倉				
華竹	兜率院		坎岳山			
斗嚴	可倉					
主亨	可倉					
弘一	可倉					
崔同	可倉					
永大	搜理洞	可倉	可倉			
根伊	搜理洞	搜理洞		搜理洞		坎岳山
達善	搜理洞					
祿伊	搜理洞	搜理洞		可倉		坎岳山
又根	搜理洞	搜理洞				
性眞	坎岳山	兜率院				
福文	坎岳山	坎岳山				
能爲	坎岳山	坎岳山	可倉			
甲祿			搜理洞			
連玉	坎岳山					
達文	坎岳山	搜理洞	兜率院			
美孫		兜率院				
明得		兜率院				
祿孫		兜率院				
太孫		可倉				
哲根		可倉				
性業		可倉		兜率院		
碧春		可倉				
達孫		坎岳山	兜率院			

산직안(작성연대)/ 花名	壬辰案 (1772년)	丁酉案 (1777년)	(己亥案 (1779년)	庚戌案 (1790년)	『鶴山精舍松安 君廟守直奴案』 (1790년)	丁巳案 (1797년)
荔叱江牙之		坎岳山				
福孫		坎岳山				
應世		坎岳山				
興伊			兜率院	兜率院		
守英			兜率院	兜率院		
就慶				兜率院		
夫慶				兜率院		
岳伊				可倉	○	兜率院
德伊				坎岳山		
仁俊				可倉		可倉
忠根				搜理洞		
翼伊				搜理洞		
後眞				搜理洞		
萬壽				搜理洞		坎岳山
春伊				搜理洞		
萬允				坎岳山		
東俊				坎岳山		
仲根				坎岳山		
畢俊				坎岳山		
一根					○	可倉
朔夫里					○	搜理洞
福只					○	兜率院
永根					○	兜率院
性大				坎岳山		兜率院
守業					○	兜率院
花石					○	可倉
哲伊				可倉		可倉
百伊					○	可倉
小口祿					○	搜理洞
鳳岳						搜理洞
大孫						搜理洞
業伊						搜理洞
哲俊						坎岳山

산직인(작성연대) 花名	壬辰案 (1772년)	丁酉案 (1777년)	(己)亥案 (1779년)	庚戌案 (1790년)	『鶴山精舍松安 君廟守直奴案』 (1790년)	丁巳案 (1797년)
萬哲						坎岳山
鶴伊					○	坎岳山
萬在						坎岳山
貴根						坎岳山
律伊						兜率院
世文					○	
尙□					○	
達伊					○	
又述					○	
億伊					○	
建伊					○	

*○은 소속된 묘산은 알 수 없으나 해당묘직인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표기한 것임.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墓直들이 각 묘산에 매우 임의적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표에 의하면 한 묘직이 동일한 묘산에 배속된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된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묘직안에 의하면, 達根, 華竹, 永大, 根伊, 祿伊, 性眞, 能爲, 達文, 性業, 達孫, 萬壽, 性大 등은 다른 묘산으로 이속된 묘직들이다. 묘직이 2곳 이상 묘직안에 소속된 사례 중 변경된 사례를 비율로 따지면 약 60%를 차지한다.

위의 분석에서와 같이 변동 사례가 60%에 달한다면, 묘직이 수시로 이사를 다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근대에서의 사회 성격을 참작한다면, 이 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묘직의 배속이 장부에서만 편의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분석의 결과가 비록 미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연구에 시사해 주는 바는 크다. 이 묘직안은 실상과는 무관하게 관에서 사족이 필요로 하는 방식대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묘직은 이같은 파기방식과는 별도의 사회적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들 묘직들은 이름으로 볼 때 노비들이라는 것

이다. 이정희 집안은 다수의 노비들을 필요로 했고, 노비노동에 기반한 농업경영이 당시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정희 집안에서 행하였던 묘직경영의 실상은 어떠하였을까? 성봉현의 연구는 이같은 묘직 경영의 일반적인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光山金氏 議政公派의 사족들이 墓直을 門中契의 형태로 경영하면서, 묘 아래에서 묘를 수직하는 것은 물론, 宗家에 仰役하거나, 급기야는 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면서 納貢奴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¹⁶⁾ 그는 이 집안의 묘직안의 분석을 통해 墓直奴의 사역형태를 納貢, 宗家の 仰役, 墓直으로 분류한 뒤, 묘직을 제외한 납공과 양역의 비율이 50~60%에 달하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이 분석을 토대로 墓直奴의 존재방식을 “묘직 즉 묘수호가 신역이었지만 실제로 묘의 수직을 신역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절반이상이 납공노비나 종가 양역 등의 형태로 사역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묘직이 묘의 수호를 신역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대부분은 종가의 사적 노동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듯이 묘직 탈역자의 수를 놓고, 관과 이정희 집안 사이에서 5명이니 3명이니 하며 조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 두 당사자 사이에는 묘직을 단순히 묘역을 관리하는 인원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1묘에 묘 관리나 제수마련을 위하여 5명의 묘직을 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사족의 탈역 묘직의 수는 1~2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정희 집안에서 묘직의 탈역자 수를 늘려 한 것은 순수히 墓祭나 묘의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 이외에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을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도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정희 집안은 어떤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던 것일까? 이때 『松澗日記』를 통하여 이정희 집안의 17세기를 전후

16) 成鳳鉉, 「朝鮮後期 門中所有 墓直奴婢의 運營과 所有規模의 變化」, 『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景仁文化社, 1996), 421~431쪽.

한 시기에 있었던 농업경영의 실상에 대하여 분석한 김건태의 연구가 주목된다.¹⁷⁾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정희 집안에서 노비를 직접 동원하여 기경에서 타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주가 관할하는 家作制의 비중은 作价와 並作을 위주로 한 농장경영에 비하여 부차적이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가작제의 경영은 중요한 농업경영의 한 형태였고, 평균 3~8명의 노동조직을 늘 필요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집안이 지주로서의 농업경영에서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수하인이 묘직의 명목으로 다수 탈역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집안의 지주경영에 결정적인 혜택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18세기 이후 묘직이 탈역을 받지 않은 채 묘직 자신의 농업경영을 자립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이다. 이 시기에 묘직의 탈역을 허용한다는 것은 탈역된 묘직만큼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여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묘직의 탈역이 갖는 의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즉 수하인을 새로이 확보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노동력의 요구는 이 집안이 宗家라는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17세기 후반이라고 하지만, 이 집안은 좀 더 이른 시기에 상속제의 변화에 따른 宗家型 경영을 하였으리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이들은 대체로 50%에 달하는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확보가 급선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7) 金建泰, 「16~18世紀 兩班地主層의 農業經營과 農民層의 動向」(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50~57쪽 참조.

18) 17세기 종가형 지주의 출현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132~271쪽 참조.

V. 결론

이정희 집안이 더욱 많은 묘직을 탈역시키려 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되도록 많은 노동력을 수하에 거느림으로써 그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수의 묘직을 경영하는 주체는 분명히 이정희 집안이었다. 이 노동력을 필요로 한 경제적 이유도, 묘직의 탈역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도 모두 이 집안이 증가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증가가 아니었다면 재사를 관리할 까닭도 없을 뿐 아니라, 이황이라는 현조를 명분으로 그 선조의 묘직을 탈역하고자 하는 명분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정희 집안은 자신이 증가라는 점, 자신들이 이황이라는 현조의 자손은 아니지만, 2~4대 조상이 이황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사회적 지형을 이용하여 묘직들을 탈역시킬 수 있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묘직들을 탈역시킬 수 있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표현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정희 집안이 이 권한을 통하여 묘직이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희 집안이 이러한 특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이 집안의 어떤 사회자원에서 나온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이같은 다수의 묘직을 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안이 막연히 사족층에 속해 있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현조인 이황과의 관련성을 통해 자신의 특권을 주장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논리의 수위가 매우 치밀하였다는 것은 현실에 통용될 수 있는 근거를 찾기에 부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어떤 논리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이는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상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떤 대상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인가라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특권을 획득하려는 논리를 설정하고자 한 것은 사족층 이외의 다른 계층에 대해 설득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족층 내부에서 다른 사족들과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기 위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정희 집안의 묘직탈역완문은 묘직을 탈역받을 수 있는 사족층, 즉 사족층 중에서도 상급의 사족층으로서, 그 탈역묘직의 수가 다른 일반 사족보다 많은 특권을 보장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합의된 공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관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특권을 부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합의적인 의미의 공의야말로 사족층 내부의 계층 분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족층의 특권은 국가로 부터 취득해 낸 특권으로서 그 명분은 문화적 의미가 강한 것인 한편, 사족 내부의 협의의 산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안의 묘직탈역완문은 탈역특권의 부여라는 의미 뿐 아니라 분화된 상급사족층의 특권을 공인하는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사족층의 특권과 관련하여 서원완문을 분석하는 분야가 남아있다. 서원문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족 특권의 양 날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원완문을 통해 사족특권의 일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사족계층의 계층적 특성을 구명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족 특권의 성격을 해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ilege of the Local Elite Class(士族) in the Late Joseon Period through Myo-jik-Tal-yeok Wanmun(墓直頃役完文)

Kim, Hyok*

This paper aims a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ivilege of the local elite class(在地士族) in the late Joseon period by analyzing those of their Myo-jik—Tal-yok Wanmun(墓直頃役完文). Since 17C, Wan-mun could be issued after due formalities such as application (like So-ji 所志) submitting, application examining, law and regulations study. They should correspond to the moral justice of respecting sages · loyalty · filial piety · principle, the ideology of Confucianism country and the unbiased view of society. It is noteworthy that Wan-mun had issued after the process of propriety in the 17th century. Those changes give a view to see social feature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implies that discretion of local officials and power of Sajok were a lot limited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it suggests that the society can't help accepting new social principles instead of discretion.

Based on this change, the government might have a task how to control the demand of Sajok and Sajok also realized they needed a change to be a new ruling class and to have a practical reform on their own. This brought a momentum to change the order of Sung Confucianism actively in the Joseon society. 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Sajok could reach agreement through the Confucian thoughts.

Criteria allowing advantages to Sajok should be acceptable for public opinions(公議)

* Lecture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hich the government had and as for the reason of privilege, confucian concepts has been presented such as loyalty, filial piety, authority, respect and so on.

Sunyoung Wan-mun(先塋完文) and Sewon Wan-mun(書院完文) are specific examples of Wan-mun at that time. Both of them show many aspects of Sajok's privilege. In particular, they show the main aspect of Wan-mun which is depending local officials totally and not having any legal basis. In other words, those Wan-mun were achievement of Sajok's great efforts, not given. It's a proof that scholar noble classes achieved their ruling level by maintaining tension with the government in a restricted circumstance.

From the main family of Yi Hwang, I confirmed that Jinseung Yi family's Myo-jik Tal-yok Wan-mun(墓直頃役完文) was used rather for the main family than a grave keeper by exemption of requisition. But even until the middle of 18th century most of Wan-mun was tal-yok Wan-mun which means exemption of requisition. However, typical of Wan-mun related with the privilege of nobility was not the exemption of requisition of nobility themselves but the perpetrator of nobility. Actually tal-yok of perpetrator resulted in nobility's profits, it is an outstanding feature. I name such kind of Wan-mun 'Hyopho Tal-yok Wan-mun(挾戶頃役完文)'.

I tried to introduce a case of 'Hyopho Tal-yok Wan-mun(挾戶頃役完文)' Yi jeong hoi(李庭檜) family has had in this paper. It showed a special characteristics of 'Hyopho Tal-yok Wan-mun(挾戶頃役完文)'. The family could have the right of using 15~20 man-power by getting this wan-mun. This right came basically from the idea of respecting Yi Hwang, one of the most famous scholars in the Joseon period. In addition, it came from the family's responsibility of managing his ancestors' tombs. These characteristics was to correspond to the Confucian main idea. Showing the rather complex idea meant that the family had the strategy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other lower sajok class.

In conclusion, we ended in getting to knowing the sajok class's privilege has the characteristics of making use of the cultural resources, not economical and political resources.

[Key Word] the privilege of the local elite class(在地士族), Myo-jik—Tal-yok Wanmun(墓直頭役完文), 'Hyopho Tal-yok Wan-mun(挾戶頭役完文)', the cultural resources, the exemption of requisition